

## 연 구 논 문

## '창씨개명'과 친일 조선인의 협력

최재성\*

- |                  |               |
|------------------|---------------|
| 1. 머리말           | 4. 친일 조선인의 협력 |
| 2. 창씨제 실시를 위한 준비 | 5. 맺음말        |
| 3. 창씨제 실시 과정과 결과 |               |

## 1. 머리말

2010년은 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창씨개명'이 강제 시행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70년 전인 1940년에 실시된 창씨개명은 씨를 창설한다는 '창씨'와 이름을 고친다는 '개명', 이렇게 두 가지 행위를 하나로 묶어 표현한 용어로 두 가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창씨는 신고제이고, 개명은 허가제였다는 점이다.<sup>1)</sup>

---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BK21사업단 연구교수

1) 신고제인 창씨는 호주가 부청이나 읍·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씨 설정계(창씨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허가제인 개명은 관할 법원에 개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개명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다시

1940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실시되었던 이 제도에 따라 전 조선인의 넷 중 세 명꼴인 1천 7백 6십여만 명이 창씨 신고를 마쳤다고 한다.<sup>2)</sup> 그리고 창씨 신고 마감 이튿날인 8월 11일부터는 조선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호주의 ‘姓’이 그대로 자신의 ‘氏’로 전환되었다.

‘창씨개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오해가 있다. 하나는 일본 측 우익 인사들의 간헐적인 망언으로 나타난다. 麻生太郎 전 일본 수상이 자민당 정조회장이던 2003년 6월에 했던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국내의 ‘친일 청산’ 반대 논리에 동원되는 오해이다.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에 반대하는 이들은 ‘창씨는 곧 친일’이란 오해를 기초로 창씨 신고 당시 조선인 가운데 다수가 창씨하여 친일혐의자가 되었으므로 결국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될 인물을 선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했다.

물론 창씨제 시행 이전에도 조선인 가운데 자신이 원해서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 사람도 없지는 않았다.<sup>3)</sup> 또 창씨제 실시 기간에 본론에서

부청이나 읍·면사무소의 호적계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호적 정정 절차를 밟았다. 둘 사이의 차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창씨	개명
방법	신고(호주가 신고서를 관청에 제출)	허가(법원의 허가 필요)
제출처	부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호적계	관할 법원
기한	6개월 한시(1940.2.11~8.10)	없음
수수료	없음	건당 50전

1940년에 실시되었던 ‘창씨개명’은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의 ‘성명’제도를 일본식 ‘씨명’제도로 강제 전환한 것으로 개명까지 강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명’을 분리하여 ‘창씨’제로 표현해야 옳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서는 ‘창씨개명’이란 용어가 이미 관용어로 정착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필자도 그것을 따르되, 이 제도 전체를 언급할 때는 ‘창씨개명’으로 하고, 창씨 신고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서술할 때는 ‘창씨’로 구분하여 사용코자 한다.

2) 조선총독부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에 창씨 신고를 마친 호적 수는 전체의 80.5%에 해당하는 약 323만 개의 호적(『思想彙報』 제25호,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40.12), 창씨 인구수는 전체 조선인의 79.6%인 1천 7백 60여만 명(『朝鮮』 305호, 조선총독부, 1940.10.1)이었다. 참고로 창씨 신고와 별도로 1940년 2월 11일부터 10월 31까지 ‘개명’ 신청 건수는 전체 조선인수의 1/10도 안 되는 187만여 건(『朝鮮』 305호)이었다.

3) 1910년 11월 23일 조선총독부 警部 金大元과 조선총독부 통역생 金相弼이 각각 北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스스로 창씨뿐만 아니라 개명까지 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례가 1940년 창씨제 시행 과정에 있었던 일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창씨 신고 시한 다음날인 8월 11일부터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성명’ 대신 ‘씨명’으로 호적부에 기재 되도록 한 점, 결혼 후에도 자신의 姓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선의 기혼 여성들이 자신의 ‘성’ 대신에 호주인 남성(남편이나 시아버지 등)의 ‘씨’에 따라야만 하는 점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법률적 강제가 있었다. 또 미즈노 나오키 교수가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낸 1940년 6월 12일 부산지방법원장이 관내 부윤과 읍면장 앞으로 보낸 문서(씨 설정 독려에 관한 건)에서 강제성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창씨개명에 대한 연구는 크게 법제도와 역사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sup>4)</sup> 역사학 분야에서는 김영달, 宮田節子, 水野直樹 등 일본 내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sup>5)</sup> 이들 연구를 통해 창씨개명 제도의 실시 목적과 조선총독부 측의 강제성, 그리고 이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 등이 상세히 밝혀졌다. 이를 통해 일본 우익 인사들의 망언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에 이글에서는 국내에서의 오해에 초점을 맞추어 일제의 창씨제 시행 강제에 맞춰 선전과 선동 등을 통해 협력했던 친일 조선인의 행태를

川元雄, 永清金三郎으로 改姓 改名했던 것에서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1월 26일자 ;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4월 14일자). 이들 외에도 조선총독부 警視 金海龍이 1910년 12월 19일 金江龍雄으로 개성 개명했다.

4) 법제도면을 고찰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주수, 「창씨개명연구」 1~6, 『사법행정』, 2003.11~2004.5 ;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역사비평사, 2008 ; 坂元眞一, “明治民法”의 성씨제도와 “創氏改名”(朝鮮)·“改姓名”(臺灣)의 비교분석, 『법사학연구』 제22호, 2000.10.

5) 宮田節子·金英達·金泰昊, 『創氏改名』, 明石書店, 1992(정운현 편역, 『창씨개명』, 학민사, 1994에 번역·수록) ; 金英達, 『創氏改名の研究』, 未來社, 1997 ; 金英達, 『創氏改名の法制度と歴史』, 明石書店, 2002 ; 宮田節子, 「創氏改名에 대하여」, 『벽사 이우성교수 정년퇴직 기념논총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 하, 창작과 비평사, 1990 ; 水野直樹, 『創氏改名－日本の朝鮮支配の中で』, 岩波書店, 2008(미즈노 나오키 지음, 정선태 옮김, 『창씨개명－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산처럼, 2008으로 번역 출간).

살펴보기로 한다. 2005년 5월 설치되어 2009년 11월까지 활동했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약칭 ‘반민규명위’)가 그 활동을 마치면서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1,006명의 반민족행위자 가운데 창씨개명과 관련해서 특별법이 적용된 사람은 김시권·안종철·이광수·이승우·이영근·최지환 등 6명에 불과하다.<sup>6)</sup> 반민규명위가 이들 6명의 행위에 대해 창씨제 관련 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고 해서 1940년의 창씨개명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부 기구가 내린 이 결정을 기초로 이제 역사적 연구대상으로서 친일 조선인들의 창씨제 협력 행위를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창씨 신고를 한 당시 대부분의 조선인들에게 ‘친일’의 딱지를 붙여 역사적 책임을 희석시키는 우를 범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그 대신 창씨제 실시에 앞장섰던 조선인들을 선별하여 그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다.

## 2. 창씨제 실시를 위한 준비

### 1) 창씨제 실시를 위한 법령 마련

창씨개명의 실시 준비는 1937년 司法法規改正調查委員會<sup>7)</sup> 구성으로부터 시작되어 1939년 제령으로써 조선민사령 등이 개정되면서 마무리되었다. 먼저 사법법규개정조사위원회는 1937년 4월 17일 관련 규정<sup>8)</sup>이 공포

<sup>6)</sup>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2009. 김시권, 안종철, 최지환은 창씨개명 강연 행위로, 이영근은 창씨개명 응호 행위로, 이승우와 이광수는 글을 통한 창씨개명 선전 행위로 특별법이 적용되어 그들의 행위가 반민족행위였음이 결정되었다.

<sup>7)</sup> 사법법규개정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승일, 앞의 책, 266~279쪽 참조.

<sup>8)</sup> 「司法法規改正調查委員會規程」, 『조선총독부관보』 1937년 4월 17일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에서의 사법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 사법법규개정조사위원회를 둔다.

되고, 6월 10일 조선총독부 법무국장 増永正一 등 14명<sup>9)</sup>이 임명되면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정무총감이 위원장을 맡는 기구였지만, ‘조선에서의 사법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심의기구로서 안건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는 아니었다.

이 위원회에는 조선인으로서 변호사 이승우와 중추원 참의 한규복이 임시위원으로 촉탁되었다. 1937년 7월 7일의 제1차 회의<sup>10)</sup>를 시작으로 2년 4개월 정도의 활동 끝에 조선민사령 개정 등의 법안이 마련되었고, 그 결과 1939년 11월 10일 제령 제19호(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sup>11)</sup>와 제20호(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sup>12)</sup>가 공포되었다.

조선민사령은 1912년 3월 18일 제정되어 4월 1일 시행된 이래 해방될 때까지 17차례 정도 개정을 거쳤다. 그중 1940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령은 제14차 개정된 것인데, 이때 제11조와 부칙의 개정으로 창씨개명이 실시되었다. 창씨개명의 실시는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이 법적 근거가 되었다.<sup>13)</sup> 아래 표는 제11조가 크게 개정되었던 1922년 12월 15일 시행 개정령과 1940년 2월 11일 시행 개정령의 조문 내용을 비교한 표이다. 표 왼쪽 난의 ‘면장’이 ‘읍면장’으로 된 것과 부칙의 시행기일은 이후의 개

---

제3조 위원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써 이에 충당한다. 위원 및 임시위원은 조선총독부 부내 고등관 및 학식 경험 있는 자 중에서 조선총독이 이를 임명하거나 촉탁한다.

9) 増永正一은 제외한 나머지 13명은 山澤和三郎 등 조선총독부 사무관 6명, 小川悌 등 조선총독부 판사 5명, 조선총독부 검사 福田甚二郎, 경성제국대학 교수 安田幹太 등으로 ‘조선총독부 부내 고등관 및 학식 경험 있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들이었다(「敍任及辭令」, 『조선총독부관보』 1937년 6월 10일자).

10) 『동아일보』 1937년 7월 8일(3면) 「司法法規改正調査委員會開會」.

11) 1939년 11월 10일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12) 1939년 11월 10일 제령 제20호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역대 譚 또는 名은 이를 씨 또는 名에 사용할 수 없음. 자기의 성 이외의 성은 씨로 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음. 단 일가 창립의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함. 제2조 씨명은 이를 변경할 수 없음.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조선총독이 정한 바에 의해 허가를 받을 때는 차한에 부재함.

13) 창씨제 실시를 위한 법령 개정의 핵심은, 이처럼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개정이다. 제11조가 개정된 것은, 19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령과 19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령에 이어 세 번째였다.

정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이다.

〈표 1〉 조선민사령 제11조 조문 비교

그 이전	변경 내용(1940.2.11 시행)
제11조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해서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을除한 외에 제1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 관습에 의함. 단 혼인연령, 재판상의 이혼, 인지, 친권, 후견, 保佐人, 친족회, 상속의 승인 및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은此限에 不在함.  분가, 絶家再興, 혼인, 협의상의 이혼, 緣組 및 협의상의 離緣은 이를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계출함에 因하여 그 효력을 발생. 단 유언에 의한 緣組에 대해서는 그 계출은養親의 사망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생함. (조문 추가) (신설)	제11조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해서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을除한 외에 제1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 관습에 의함. 단 씨, 혼인연령, 재판상의 이혼, 인지, 재판상의 離緣, 婚養子 緣組의 경우에 혼인 또는 연조가 무효될 때 또는 취소될 때에 연조 또는 혼인의 취소, 친권, 후견, 保佐人, 친족회, 상속의 승인 및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은此限에 不在함.  분가, 絶家再興, 혼인, 협의상의 이혼, 緣組 및 협의상의 離緣은 이를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계출함에 因하여 그 효력을 발생. 단 유언에 의한 緣組에 대해서는 그 계출은養親의 사망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생함. <u>氏는 호주(법정대리인이 있을 때는 법정대리인)가 이를 정함.</u> <u>제11조의 2(생략)</u>
제11조의 2 조선인의 호적에 관해서는 後 7조의 규정에 의함. (중략)	제11조의 3 조선인의 호적에 관해서는 後 7조의 규정에 의함. (중략)
제11조의 8 호적의 기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허위의 계출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부칙 본령은 昭和15년 1일 1일부터 이를 시행함.	제11조의 9 호적의 기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허위의 계출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부칙 <u>본령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함.</u> <u>조선인 호주(법정대리인) 있을 때는 법정대리인)는 본령 시행 후 6월 이내에 새로 씨를 정하고 이를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계출할 것을 요함.</u> <u>전행의 규정에 의한 계출을 하지 않을 때는 본령 시행 시 호주의 성으로 씨로 함. 단 一家를 창립하지 않은 女戶主될 때 또는 호주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전 남호주의 성으로 씨로 함.</u>

이어 1939년 12월 26일 조선총독부령 제219~222호를 통해 관련 법령이 공포되었다.<sup>14)</sup> 이들 각 법령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제령 제19호(조선 민사령 중 개정의 건)에 따라 조선인에게도 일본 <민법>의 '씨'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씨의 창설'(창씨)이 행해지고, 동시에 조선총독부령 제220호(조선호적령 중 개정)에 의해 조선인의 법률명이 '성명'으로부터 '씨명'으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제령 제20호(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에 의해 호 적상의 '씨명의 변경'(개명) 제도가 신설된 것이었다.<sup>15)</sup> 그중 조선총독부령 제220호를 통해 개정된 조선호적령 제11조 내용을 그 이전의 것과 비교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선호적령 제11조 조문 변경 내용

그 이전	변경 내용(1940.2.11 시행)
제3장 호적의 기재수속 제11조 호적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할 것 1 호주 및 가족의 성명 및 본관, 전호 주의 성명 (후략)	제3장 호적의 기재수속 제11조 호적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할 것 1 호주 및 가족의 <u>씨명</u> , <u>성</u> 및 본관, 전호주의 성명 (후략)

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종전 호적에 기재되었던 조선인의 '성명'은 '씨명'으로 바뀌어 기재되고, 여기에 추가하여 종전 그의 '성(姓)'도 아울러 기재하는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조선인의 호적에는 그 '성'과 본관이 남아있게 된 것이다.

<sup>14)</sup> 네 가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제령 제19호, 제20호는 1940년 2월 11일부터 시행」(제219호), 「조선호적령 중 개정」(제220호), 「조선인의 씨 설정에伴한 계출 및 호적 기재수속에 관한 건」(제221호), 「조선인의 씨명 변경에 관한 건」(제222호).

<sup>15)</sup> 김영달, 앞의 책, 2002, 174~175쪽.

## 2) 창씨제 실시의 목적

### (1) 일본의 ‘家’ 제도 도입

조선총독에 의해 사법법규개정조사위원회 임시위원으로 촉탁되어 활동했던 이승우는 1939년 11월 10일 제령 제19호(「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가 공포된 직후 창씨제 도입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sup>16)</sup>

이번 개정된 부분은 ‘씨’제도를 창설한 것과 이에 따르는 서양자(婿養子)제도의 개정한 부분인데 대체로 조선 사람들에게는 ‘집’의 칭호(稱號) 혹은 부호(符號)라고 할 수 있는 ‘씨’를 갖지 못하고 혈족(血族)만 가리키는 성만을 가졌다. 그러기 때문에 한 ‘집’에 성이 다른 사람이 많이 살아 왔었고 ‘집’과 ‘집’ 사이에 구별이 없었다. 이러한 법률적(法律的) 의미 외에도 이번의 개정은 내선일체를 질(質)로서부터 실천하여야 한다는 정치적(政治的)인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 것이다.

이승우의 설명에 따르면, 창씨제 실시 이유는 법률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 두 가지이다. 법률적 의미는 혈족만 가리키는 조선 전래의 ‘성(姓)’ 대신에 ‘家’의 칭호 혹은 부호라고 할 수 있는 일본식 ‘씨’를 도입한다는 것이고, 정치적 의미는 ‘내선일체를 질로서부터 실천’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의미는 잠시 다음으로 미루고 법률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승우의 설명을 보다 자세히 밝히고 있는 것은 총독 南次郎이 천황에게 상주한 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7)</sup> 먼저 조선 전래의 성은 ‘중국 문화의 浸潤에 의해 혈족단위가 사회 구성의 기본으로서 존중된 것’이라고 하면서, ‘血族 中心主義를 脫殼하고 國家 中心의 觀念을 培養하여 日本 國體의 本義에 徹底케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

16) 『매일신보』 1939년 11월 9면 「알기 쉬운 氏와 養子—조선민사령 일부개정에 관하여, 辯護士 李升雨氏의 解說」.

17) 『昭和十五年上奏書』(1940년 5월), 민족문제연구소 편,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 총서』 제25권, 한국학술정보, 2000.

다고 창씨제 실시 배경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그러한 배경에서 ‘종래 일가에 부부가 성을 달리하였으나 동일한 씨를 칭할 방도를 열고, 다시 이성 양자, 서양자의 제도를 만들어 日本 古來의 風習과 一致’시키기 위해 창씨제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조선 전래의 성제도는 어차피 조선 고유의 것이 아닌, 중국 문화의 침윤에 따라 만들어진 혈족 중심주의의 산물이므로 그것을 탈각하고, 천황제 국가 중심의 관념을 배양하여 일본 국체의 본의에 철저케 하기 위해 조선에서 일본 고래의 풍습인 ‘家’제도를 도입, 실시하여 일본의 家제도와 일치시킬 목적이라는 것이다.

조선에서 창씨제를 도입한 것은, 천황을 宗家로 하고 그 아래 臣民인 가장이 이끄는 각 家가 分家로서 존재하는 일본과 달리 조선에서는 男系血統에 기초한 강고한 종족집단이 존재하고 있어 이것이 식민지 지배체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남차랑의 조선총독부는 조선 내 종족집단의 힘을 줄이기 위해 가족제도를 ‘일본화’한 것이 었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한편 일본에서 家의 칭호로서의 씨가 법제화된 것은 1898년 明治 민법 친족편 제정에 의해서였다. 명치 민법은 가장인 호주에게 큰 권한을 만든 다음 국가가 家를 통해 개인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창출한 것으로, 이 시스템에 의해 家가 직접 천황과 결부되어 있다는 관념이 형성되어 명치 민법은 천황을 정점으로 한 국가체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결국 조선에서 창씨제가 실시된 것은 법률적으로 일본식 家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의 씨는 家제도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으로 일본 천황제 국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창씨제 실시를 통해 일본식 家 제도를 도입하고, 그를 통해 조선에서도 일본에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18) 미즈노 나오키, 앞의 책, 49쪽.

19) 위의 책, 77쪽.

## (2) 황민화 정책의 일환

이승우가 밝혔던 두 가지 가운데 앞에서 잠시 미뤄두었던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자. 먼저 남차랑은 1941년의 상주서를 통해 ‘陸軍特別志願兵制, 創氏改名, 國民總力運動 전개 등으로 조선인의 皇國臣民化는 더욱 廣汎히 普及되었음에 이르렀’라고 밝혔다.<sup>20)</sup> 남차랑은 스스로 창씨개명이 황국신민화의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황국신민화(황민화)는 1936년 南次郎이 조선총독에 임명되어 시행한 것으로 주요하게는 1937년 7월 발발한 중일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태평양전쟁까지 이르는 전시체제기에 조선인의 정신을 개조하여 전쟁에 협력토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던 것이다. 특히 중일전쟁 기간 중 황국신민서사 제정, 조선교육령 개정, 육군지원병제 실시, 일본어 사용 강제 등이 이루어졌다.

황민화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鹽原時三郎과 학무국 촉탁 奧山仙三에 의해 조선인의 모든 것을 일본인 풍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내지화’(일본화)가 추진되었다. 그 일본화 대상에는 가족제도의 변경까지도 포함되어 창씨제 실시를 통한 ‘가’제도의 도입이 이뤄진 것이다.<sup>21)</sup> 조선인을 병사 등으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천황에 대한 충성심이 절대 필요했던 것이고,<sup>22)</sup> 창씨제 실시와 ‘가’제도 도입은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배양하는 토양으로 인식된 것이었다.

결국 창씨제 실시를 통해 일본식 家제도를 도입한 것이 법률적 의미라면, 그를 통해 조선인들로 하여금 천황을 종가로 생각하는 ‘家’ 관념을 갖도록 하여 일본 천황제 국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맡도록 한 것은 정치적 의미라 할 수 있다.

---

20) 『昭和十六年上奏書』(1941년 5월), 민족문제연구소 편,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 총서』 제25권, 한국학술정보, 2000.

21) 미즈노 나오키, 앞의 책, 57~60쪽.

22) 위의 책, 76쪽.

### (3) 총독 남차랑의 통치 업적 과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보면, 창씨제 실시의 목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적·정치적 의미만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 외에 다른 의미는 없을까? 이유가 그것뿐이라면 창씨제는 왜 하필 그 시점에 실시되었을까, 제7대 총독인 남차랑은 그 이전의 총독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왜 일제의 조선 통치 30주년 되는 해에 맞춰 실시하게 된걸까? 하는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남차랑이 창씨제를 강행할 때 사실 일본 내의 반대와 총독부 내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런 반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sup>23)</sup>

먼저 1940년 5월 조선총독이 천황에게 상주한 글에서 창씨제 실시에 대해 ‘반도 통치사상 획기적인 제도’라는 남차랑의 자평<sup>24)</sup>을 보자. 이러한 류의 자화자찬은 1941년의 제77회·제79회 제국의회 설명자료<sup>25)</sup>에서 각각 ‘조선 통치상 경이적 자료’, ‘반도 30년 통치사상 최대의 功業’으로 이어진다.

‘반도 통치사상 획기적인 제도’, ‘조선 통치상 경이적 자료’, ‘반도 30년 통치사상 최대의 功業’이란 자평은 1910년 한일합병에 따라 일제 식민지 배가 시작된 이래 30년 만에 통치 역사에서 그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제도라는 의미이며, 지난 30년간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을 南次郎 본인이 이루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남차랑의 그 업적이 빛을 발하려면 조선총독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임을 역시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절대로 강제가 아니니’는 언술로서 1940년 3월 5일 총독부 국장회의에서 남차랑은 ‘창씨를 하라는 것은 강제한다는 주지는 절대로 아니다’고 강조했다.

<sup>23)</sup> 일본 내부의 반대는 조선총독부 고관을 지낸 인사들의 모임인 중앙조선협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고(미즈노 나오카, 앞의 책, 139~142쪽), 총독부 내부의 반대는 경무국과 식산국장 등이 비판적 의견을 갖고 있었다(같은 책, 65~66쪽).

<sup>24)</sup> 「昭和十五年上奏書」(1940년 5월),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제25권.

<sup>25)</sup> 제77회(1941년 11월)와 제79회(1941년 12월) 제국의회 설명자료는 민족문제연구소 편,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제5권과 제13권 각각 참조.

조선인의 다수(1939년 12월 29일 총호수 440만 호의 약 18%인 79만 호 예상, 결과는 약 80%)가 6개월이라는 신고 기간에 ‘자발적’으로 창씨에 응했다는 것은 총독의 업적으로 과시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기대와 달리 실적이 저조할 경우, 내외의 큰 비판에 직면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그러한 사태를 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창씨 신고서 제출 예상 목표치를 그리 높지 않게 잡는 일과 보이지 않게 창씨 신고를 강요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절대로 강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총독부 관리들을 닦달하는 발언도 했다. 1940년 2월 27일 국장회의에서 총독은 “아직 취지가 철저하지 않은 경향도 있는 듯하다”, “이 새 제도 창설의 중요성에 관하여 이제 한층 더 심각하게 인식할 것을 희망한다.”고 했고, 실적이 아직 저조했던 4월 23일 도지사회의에서 총독은 “본 제도의 대 정신을 궁구하여 관하 민중 각 층에 철저하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던 것이다.

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당시 정무총감의 증언(“총독은 말로는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속마음으로는 강제로라도 시키고 싶어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었지요”)과 이광수의 기고문(“씨의 내지화가 강제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남차랑 총독의 말을 보면 되도록 조선인 전체가 내지식 씨명으로 바꿀 것을 바라고 있는 염려가 확실히 나타나 있다.” 「존폐의 선택」)에서도 남차랑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남차랑은 창씨제 실시와 조선인의 창씨 신고 실적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자 했던 흔적이 역력한데, 그 치적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코자 하지는 않았는지 의심이 든다.<sup>26)</sup>

26) 남차랑 이전 총독들의 조선총독직 이후의 진로를 보면, 3·1운동 빌발로 문책 경질된 제2대 長谷川好道와 수뢰·독직의 오명을 쓰고 물러난 제4대 山梨半造를 제외하면, 초대 寺內正毅와 제3·5대의 斎藤實은 내가 수상으로 영전했고, 남차랑 직전의 제6대 宇垣一成도 '組閣의 大命'을 받았다. 大過도 없었고, '반도 30년 통치사상 최대의 功業'을 이룬 총독으로서는 자연히 조선총독직 이후의 진로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 3. 창씨제 실시 과정과 결과

#### 1) 실적 제고를 위한 총동원

##### (1) 실시 과정의 추이와 특징

창씨제는 남차랑 총독이 강력히 추진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창씨 신고 실적 제고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다. 창씨 신고 첫 날인 2월 11일은 일요일이자 일본의 ‘기원절’로 공휴일이었으나, 부청과 읍·면사무소 직원들은 출근하여 창씨 신고서를 접수했는데, 이를 통해 창씨제 실시에 임했던 조선총독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창씨제 실시기한이 절반쯤 지났을 무렵 중간 집계가 발표되었다. 물론 그 전에도 신문 기사를 통해 각도별 실적이 수시로 보도되었지만, 이 중간 집계는 조선총독부 자료를 통한 공식 기록이란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에 따르면, 1940년 2월 11일부터 5월 중순까지 초기 3개월간 이루어진 창씨 신고 건수는 32만 6천여 건이었다. 신고 기간 6개월 가운데 절반을 넘긴 시점이었지만, 신고 대상 호적총수 428만 2,753의 7.6%에 불과한 실적이었다. 이를 도별·월별로 자세히 나타내면, 다음 〈표 3〉과 같다.

이를 월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첫 달인 2월<sup>27)</sup>은 1만 5천 7백여 건, 3월은 2만 5천 8백여 건, 4월은 급증하여 11만 5천여 건, 5월은 중순까지 약 반 달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4월 한 달간의 실적보다 더 많은 16만 9천여 건이었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를 보면, 2월과 3월은 830명 전후로서 그 변화가 미미하였으나 4월에는 일약 5배 가까운 수치가 되었다. 그리고 5월에는 다시 또 더 크게 증가했다. 창씨제 신고 건수 추이를 ‘눈사태 현상<sup>28)</sup>’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눈사태처럼 늘어난 것은 4월부터였

---

을까?

27) 2월 실적은 11일부터 29일까지 19일치이다. 1940년 2월은 윤달로 29일까지 있었다.

28) 宮田節子, 앞의 논문, 1990, 1019쪽.

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표 3〉 쌍신고 건수(2~5월 중순)(1940.6.6)

구분	2월	3월	4월	5월 중순	합계	호적총수	비율
경북	8,219	4,142	56,658	28,979	97,998	429,782	22.8
충북	235	831	3,611	13,326	18,003	150,518	12.0
충남	302	1,385	5,437	24,204	31,328	315,408	9.9
평북	578	2,098	7,156	13,556	23,388	304,349	7.7
경기	947	3,148	8,585	19,858	32,538	460,422	7.1
평남	615	1,664	4,229	10,633	17,141	257,323	6.7
황해	399	943	6,111	15,115	22,568	367,331	6.1
강원	888	2,633	6,149	6,584	16,254	298,093	5.5
경남	1,290	3,193	6,828	10,597	21,908	454,571	4.8
전남	265	1,237	3,586	17,231	22,319	480,406	4.6
함북	590	1,195	2,343	3,006	7,134	192,998	3.7
함남	924	2,127	2,975	4,016	10,042	275,785	3.6
전북	494	1,235	1,787	1,925	5,441	295,767	1.8
합계 (일평균)	15,746 (828)	25,831 (833)	115,455 (3,848)	169,030 (11,089)	326,062	4,282,753	7.6

출전: 『思想彙報』 제23호,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40.6. 86~87쪽.

주1: 구분의 도별 순서는 창씨 신고비율이 높은 순서로 원문에 따른 것임.

주2: 합계 부분은 필자가 원문의 오류를 바로잡아 재작성한 것임. 음영부분 숫자가 오류를 바로 잡은 수치임.<sup>29)</sup>

주3: 월별 계 간 아래 줄 팔호 안의 수치는 일평균(소수점 이하 버림)으로서 원문에 없는 것인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추가한 것임. 5월의 일평균은 5월 한 달 실적(343,766건)을 31일로 나눈 것임.

이제 월별로 창씨 신고 추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창씨개명이 실시된 첫날인 2월 11일 경성부에서는 48건이 신고 되었다.<sup>30)</sup> 둘째

<sup>29)</sup> 전체적으로 32만 6천 62건보다 43건 많은 32만 6천 105건으로 집계(43건 과다)되어 있다. 월별로는 3월(4명 초과), 4월(19,960명 과소), 5월(1명 초과) 통계에서 오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도별로는 평북(40명 과다), 경기(1명 초과), 경남(2명 초과) 분의 집계에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는 창씨 신고 합계에서 뿐만 아니라 호적수의 합계(4,282,753→4,282,754)와 충남의 신고 비율(9.9%→9.6%)에서도 보인다.

<sup>30)</sup> 『매일신보』 1940년 2월 13일(2면) 「名士의 創氏遷至」.

날인 2월 12일에 경성부에는 오전 39건, 오후 2시 현재 43건이 신고 되었고, 주요 인물은 이광수(香山) · 이승우(梧村) · 이원보(李家) · 조병상(夏山) · 윤갑병 · 최지환 등이었다.<sup>31)</sup> 주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조선총독부 고등관들로 여기에 문필가로 유명했던 이광수를 포함하면 조선인 여론 주도층이라 할만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창씨제 개시와 함께 곧바로 창씨 신고를 한 것은 모범을 보이기 위한 솔선 행위였다.

2월 11일 솔선 창씨가 시작되는 한편, 독려를 위해 총독부 순회강연반이 만주에 파견되었다. 강사는 총독부 법무국 사무관, 외사부 촉탁 등이었고, 2월 27일 연길부터 시작되었다.<sup>32)</sup>

이와 같은 솔선과 독려 속에 약 20일이 지난 2월 말 현재 창씨 신고자는 1만 5천 746호에 이르렀는데, 그중 경북이 8천 219호로 과반을 차지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유교 관습이 강한 지역으로서 문중 단위의 창씨 신고가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뒤에서 보게 될 경북 유림의 집단 창씨의 사례에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다. 경북 유림은 26,842명 중 99%에 해당하는 26,670명이 창씨에 참여했다.<sup>33)</sup>

두 번째 달인 3월에 들어서 3월 5일에 열린 총독부 정례국장회의에서 남차랑 총독은 창씨제 실시는 “절대로 강제함이 아니라고 재삼 강조”<sup>34)</sup> 했으나 조선총독부의 제2인자인 오노 정무총감의 “총독은 말로는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속마음으로는 강제로라도 시키고 싶어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었지요”라는 증언<sup>35)</sup>을 볼 때, 이는 수사일뿐 창씨개명에 대한 총독의 속마음은 강제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조선총독이 겉으로는 강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속마음으로는 보다

31) 『동아일보』 1940년 2월 13일(2면) 「創氏九十一名 京城府에 二日間의 届出」.

32) 『만선일보』 1940년 2월 29일(2면) 「創氏趣旨徹底코져 巡迴講演班 派遣」.

33) 경북은 공자와 맹자의 출신지를 따서 한국의 ‘鄒魯之鄉’을 자치하며 유림의 세력이 강한 곳인데, 이 시기 경북 유림 가운데는 전통 유림보다는 황도 유림이 압도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34) 『동아일보』 1940년 3월 6일 석간 1면 「內鮮—體의 聖旨奉副 創氏의 新方途開拓」.

35) 오노 총감의 증언은 정재정 역, 『식민통치의 허상과 실상』, 혜안, 2002, 97쪽 참조.

빨리, 보다 많이 실적을 올리고 싶어 했던 3월 말 기준으로 창씨 신고 실적은 2만 5천 831호이고, 전월 실적을 합한 누계로는 4만 1천 577호로, 전체 호수의 약 1%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치였다.

4월부터는 다시 창씨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재개되었다. 그리하여 1940년 4월 15일부터 27일까지 국민정신동원총연맹 경기도 연맹 주최 창씨개명 강연이 실시되었다.<sup>36)</sup> 충북 청주에서는 4월 26일 청주군 창씨후원회가 결성되어 군수가 회장을 맡았다.<sup>37)</sup>

창씨 신고 실적을 높이려는 아이디어의 하나로 ‘단체 창씨’가 나타났다는 점이 4월에 있었던 창씨 신고 사례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다. 그 사례는 평북 선천군 유도회의 4월 15일 정기총회에서 935명이 4월 말까지 창씨하기로 결의하고, 그중 4월 말까지 수속을 마친 자는 919명이었다. 또 전남 여수군 유도회에서도 5월 총회에서 71명이 6월 말까지 창씨하기로 결정했다.<sup>38)</sup> 그밖에 5월 6일 종로권번 간부와 기생 7백여 명도 모여 창씨를 결의했다.<sup>39)</sup>

이와 같은 움직임 속에 4월 말 현재 모두 15만 7천 32호(전체 호수의 4% 미만)가 신고를 마쳤고, 다시 5월 중순까지 초기 3개월간 모두 32만 6천 62호의 신고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이는 전체 호수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그에 따라 이후에는 더욱 다그침이 가속되었다.

5월 중순까지 전체 호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으로 드러나자 조선총독부 측의 초조감은 더해 갔다. 그에 따라 여러 형태의 독려가 행해

36) 『매일신보』 1940년 4월 14일(2면) 「創氏의 趣旨徹底에 津々浦々 講演行脚 精動京畿聯盟主催로」; 『동아일보』 1940년 4월 14일(2면) 「創氏制 徹底코자 普及講演行腳」; 『동아일보』 1940년 4월 15일(2면) 「創氏講演行脚 精動京畿聯盟서」.

37) 『매일신보』 1940년 4월 29일(3면) 「淸州創氏後援會 官民一致로 結成코 趣旨의 普及에 努力」.

38) 『매일신보』 1940년 6월 12일(2면) 「본바들 儒林의 創氏熱 宣川과 麗水儒林團 千餘名一齊創氏」; 『동아일보』 1940년 4월 18일(2면) 「宣川儒林創氏決議」; 『동아일보』 1940년 4월 18일(2면) 「宣川儒道會서 九百名創氏」; 『朝鮮總督府官報 附錄 通報』 제68호(1940년 5월 1일), 13쪽 彙報에는 4월 16일자 기사에 953명이 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9) 『매일신보』 1940년 5월 9일(2면) 「鍾路券番妓生들 一齊創氏를 決議」.

졌다. 먼저 관리의 독려인데, 경기도 부윤군수회의가 5월 20일부터 22일 까지 3일간 3부 20군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도지사(甘蔗義邦)는 창씨제도의 강화, 청년훈련소의 확충,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철저, 식량문제 해결에 협력 등을 강조했다.<sup>40)</sup> 또 집단 결의도 있었는데, 6월 8일 평북 삼주읍의 삼주신사에서 정신총동원 삼주군연맹 대회에 참석한 950명이 일제히 창씨를 결의했다.<sup>41)</sup>

여러 형태의 독려 행위로 ‘5월 하순부터 매순 평균 18만 호’(하루 1만 8천 건꼴–인용자)가 신고를 하여<sup>42)</sup> 6월 말일 현재 107만 8천 690호,<sup>43)</sup> 인구 593만 2천 795명이 창씨를 마쳤다. 여기서는 그동안 호수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호수뿐만 아니라 인구수까지 발표한 것이 주목된다. 호수보다는 인구수의 자릿수가 크기 때문에 실적을 보다 과시하기에는 인구수를 발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6월 말 창씨 신고를 한 호수 107만여 호는 조선 전체 호수 427만 4천 239호의 1/4 정도인 25.2%에 해당하는 수치였다.<sup>44)</sup>

이어 7월 10일에 122만 천 호(28%), 7월 중순에 158만 3천 55호로 전 호수의 37%가 신고를 마쳤다.<sup>45)</sup> 그리고 드디어 신고 마감 기한인 8월 10일 까지의 실적(법무국 민사과 조사)을 보면, 호적수와 인구수에서 신고 실적은 약 80% 정도인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 (2) 신고 마감 후 아전인수식 통계자료 이용

창씨 신고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 비교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호수·호적수·인구수 등이 있다.<sup>46)</sup> 호수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총독부 측이

40) 『동아일보』 1940년 5월 21일(2면) 「食糧策解決을 強調 創氏制를 筆頭로 四十六個의 指示事項 今日부터 府尹郡守會議」.

41) 『동아일보』 1940년 6월 9일(3면) 「九百五十名이 一齊히 創氏 肃州精勤郡聯盟에서」.

42) 『朝鮮』 303호, 조선총독부, 1940.8.1, 80쪽.

43) 『통보』 74호, 조선총독부, 1940.8.1, 13쪽의 휘보.

44) 『朝鮮』 303호, 조선총독부, 1940.8.1, 80쪽.

45) 『통보』 75호, 조선총독부, 1940.8.15, 13쪽의 휘보.

창씨 신고 실적을 수시로 집계하여 언론을 통해 보도할 때 흔히 사용되었다. 그러나 마감 이후에는 호적수 기준으로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인구수 기준에 대한 것부터 알아보겠다.

인구수 기준은 호주가 창씨 신고를 하면 그 호적에 편제되어 있는 혈연집단은 자동적으로 씨 설정 상태가 되는 것을 집계한 것인데, 1천 760만 623명이 신고를 마쳐 총인구 2천 209만 8천 310명의 79.6%에 해당한다고 발표되었다.<sup>47)</sup> 그러나 이 총인구수는 1939년 12월 말 기준의 인구수로 1940년 1월 이후의 인구 변동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보다 정확한 자료는 1940년 10월 1일 국세조사 결과인데,<sup>48)</sup> 국세조사에 따른 조선인 인구 2천 354만 7천 465명을 비교 대상으로 하면 창씨 신고 조선인은 74.77%에 해당하여 조선총독부 공식 발표보다 4.8% 가량 실적이 줄어들게 된다.<sup>49)</sup> 그러나 실적을 과시하고 싶었던 조선총독부로서는 국세조사 결과보다는 1939년 말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의 자료를 고집했다.

다음은 호적수 대비 실적을 보기로 한다. 창씨 신고를 하는 주체는 호주이므로 창씨 신고 실적을 집계하는 데는 이 호적수와 대비하는 것이

<sup>46)</sup> 호수는 ‘호’의 합계인데, 호는 가구주를 중심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호적수는 ‘호적’의 합계이고, 호적은 호주를 대표로 하는 혈연집단이 편제되어 있는 것이다. 1개 호적 안에 호적상 분가하지 않은 복수의 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호수는 호적수보다 더 많은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sup>47)</sup> 『朝鮮』 305호, 조선총독부, 1940.10.1, 80쪽.

<sup>48)</sup>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실린 인구수와 국세조사 결과의 인구수 가운데 현실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은 국세조사 결과이다. 일시에 전국 단위로 진행된 국세조사와는 달리, 경찰관서에 의해 수시로 행해져 통계연보에 수록된 조사는 누락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40년 국세조사에 따른 조선인은 9개월 전인 천년도 통계연보의 인구보다 약 145만 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자연 증가뿐만 아니라 누락되었던 인구가 현실화된 것이었다.

<sup>49)</sup> 조선총독부 측은 창씨 실적을 여러 경로를 통해 공식화했는데, 뒤에서 보게 될 호적수 대비 비율은 ‘실제 호적수’ 개념을 도입하는 등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꾸준히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는 1939년 말 인구수 대비 비율을 끝까지 고수했다. 실제 호적수를 파악하는 데 들인 노력의 양간만이라도 ‘실제 인구수’ 파악에 투입했다면, 보다 더 정확한 실제 인구수 대비 실적을 산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장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적수가 실적을 나타내는 데 등장한 것은 1940년 6월 6일 조사된 중간 집계에서부터였다. 이때는 ‘호적 총수’가 이용되었지만, 이후 ‘실재 호적수’라는 개념으로 수정되었다. 실재 호적수는 호적 총수에서 호주가 창씨 신고를 할 수 없는 호적을 제외한 호적수이다.<sup>50)</sup> 전체 호적수에서 창씨 신고가 이뤄질 수 없는 호적수를 제외하는 것이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실적 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별다른 필요성을 느낄 수 없다.

호적수 실적은 ‘320만 116호’<sup>51)</sup>와 ‘322만 8931호’<sup>52)</sup>라는 두 개의 실적이 있다. 이 같은 혼동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공식 발행된 두 가지 종류의 조선총독부 간행물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자는 1940년 10월 1일자 조선총독부 발행 『조선』 305호에 실린 것이고, 후자는 그보다 2개월 후인 1940년 12월 4일 법무국 민사과 조사 자료로 1940년 12월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발행 『사상汇报』 제25호에 게재된 것이다.<sup>53)</sup>

창씨 호적수와 비율을 각 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도별 창씨 호적수와 비율

도별	1940년 8월 임시집계			1940년 12월 최종집계			
	창씨 호적수	비율	순위	창씨 호적수	증가	실재 호적수	비율
				증가			
경기	336,791	78.7	8	337,978	1,187	428,039	79.0
충북	126,881	89.7	1	127,249	368	180,507	70.5
충남	218,589	72.9	12	219,079	490	259,444	84.4
							3

50) 실재호적수는 호주의 소재불명, 호주상속인 없는 것 또는 絶家수속 미완료 등 창씨를 할 수 없는 호적을 제외한 수이다.

51) 『朝鮮』 305호, 조선총독부, 1940.10.1, 80쪽.

52) 『思想彙報』 25호,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40.12, 47쪽.

53) 실적 발표시기로 볼 때 전자는 임시 집계 수치이고, 후자가 최종 집계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총독부 당국도 이 두 수치 인용에 혼동을 보이는데, 제국의회 설명자료 제79회분은 후자의 수치를, 제77회분은 전자의 수치를 인용하고 있다. 또 연구자들 사이에도 두 가지 수치를 각각 인용하고 있는데, 김영달은 전자를, 宮田과 미즈노는 후자의 실적을 주로 이용했다.

전북	213,910	76.1	9	214,394	484	280,288	76.5	11
전남	342,291	82.2	6	344,753	2,462	426,768	80.8	7
경북	383,612	81.6	7	387,419	3,807	462,580	83.8	5
경남	352,671	83.4	3	354,508	1,837	420,565	84.3	4
황해	230,680	75.5	11	236,522	5,842	303,587	77.9	9
평남	184,350	75.6	10	184,677	327	238,907	77.3	10
평북	242,617	85.2	2	248,720	6,103	284,746	87.3	1
강원	235,446	83.3	4	238,475	3,029	280,699	85.0	2
함남	215,633	82.7	5	217,172	1,539	260,186	83.5	6
함북	116,645	62.1	13	117,985	1,340	182,609	64.6	13
계	3,200,116	79.3		3,228,931	28,815	4,008,925	80.5	

출전: 『朝鮮』 305호, 조선총독부, 1940.10.1 ; 『思想彙報』 제25호,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40.12.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의 숫자는 원문의 오류(80.3%)를 필자가 바로잡은 수치임.

먼저 1940년 8월 임시집계에서는 창씨 신고 호적이 320만 116호적수(戶籍數)로 실재 호적수 4백 3만 5천 111호적수의 79.3%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후 최종 집계를 보면, 창씨 호적은 2만 8천 8백여 개가 증가하였고, 실재호적수는 2만 6천 186개가 줄어들어 창씨 비율은 79.3%에서 80.5%로 소폭 상승했다.

앞의 표에서 먼저 눈에 띠는 것은 실재 호적수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최종 집계 시의 실재호적수 4백만 9천여 개는 8월의 임시 집계 시에 비해 약 2만 6천개가 줄어든 것이다. 또 6월 6일 중간 집계 때의 428만 2천 753개에 비해서는 27만 3천 828개가 감소했다. 이처럼 비교 대상이 되는 호적수가 감소되는 반면 창씨 신고 호적수는 증가함에 따라 창씨 신고율은 당연히 높아지는 효과를 낳는다.

두 번째 주목되는 점은 대부분의 도에서는 임시 집계 시에 비해 최종 집계 시의 비율이 근소하게 상승하지만, 충북(89.7%→70.5%)과 전남(82.2%→80.8%)에서는 오히려 그 비율이 줄어들고, 특히 충북의 비율은 19.2%라는 큰 폭으로 급락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도 순위에서도 변동이 생겨 충북은 1위에서 12위로 곤두박질쳤고, 전남은 6위에서 7위로 내려앉았다.

충북은 임시 집계 시에 비해 최종 집계 시에 창씨 신고 호수가 368호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줄어든 것은 실재호적수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충북의 실재 호적수가 신뢰할만한 것이었는지를 검증해 보기로 하자. 실재 호적수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자료는 1940년 6월 중간 집계 시의 호적총수, 1939년도 조선총독부 통계 연보의 호수구수, 그리고 1940년 국세조사 결과이다.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

〈표 5〉 실재 호적수와 호적 총수 등의 차이

도별	실재 호적수	호적총수 (1940.6)		호수 (1939)		세대수 (1940)	
			차이		차이		차이
경기	428,039	460,422	-32,383	453,125	-25,086	488,597	-60,558
충북	180,507	150,518	29,989	165,209	15,298	171,069	9,438
충남	259,444	315,408	-55,964	272,012	-12,568	281,581	-22,137
전북	280,288	295,767	-15,479	285,813	-5,525	300,360	-20,072
전남	426,768	480,406	-53,638	477,325	-50,557	504,135	-77,367
경북	462,580	429,782	32,798	445,493	17,087	460,501	2,079
경남	420,565	454,571	-34,006	400,823	19,742	424,799	-4,234
황해	303,587	367,331	-63,744	326,710	-23,123	341,989	-38,402
평남	238,907	257,323	-18,416	280,208	-41,301	307,754	-68,847
평북	284,746	304,349	-19,603	287,901	-3,155	301,526	-16,780
강원	280,699	298,093	-17,394	289,818	-9,119	322,053	-41,354
함남	260,186	275,785	-15,599	280,938	-20,752	317,838	-57,652
함북	182,609	192,998	-10,389	158,271	24,338	184,004	-1,395
계	4,008,925	4,282,753	-273,828	4,123,646	-114,721	4,406,206	-397,281

1. 실재 호적수는 『思想彙報』 제25호,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40.12.
2. 호적 총수는 『思想彙報』 제23호,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40.6. 이 난에 표시된 차이는 호적 총수에서 실재 호적수를 뺀 수치(이하 동일).
3. 1939년 호수는 朝鮮總督府 編纂,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39), 1941에서 인용.
4. 세대수는 1940년 10월 1일 기준 국세조사 결과(朝鮮總督官房調查課 編纂, 『朝鮮昭和十五年國勢調查結果要約』, 1944)임.

1940년 6월의 호적 총수와 12월의 실재 호적수와의 차이를 보면, 충북

과 경북만이 각각 약 3만개 전후로 실재 호적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 1939년 말 호수와 비교할 때도 충북·경북·경남만이 실재 호적수가 더 많고, 1940년 국세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충북과 경북만 세대수에 비해 실재 호적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는 결혼 등으로 독립된 호를 유지하고 있어도 호적에서 분가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호수나 세대수가 호적수에 비해 많은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충북과 경북만은 예외의 현상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그 호적수도 창씨 신고가 불가능한 호적을 제외한 ‘실재 호적수’라는데, 그 시점보다 인구와 세대수가 더 증가한 국세조사 시점의 세대수보다 실재 호적수가 더 많다는 현상은 이해 할 수 없다.

특히 이 2개 도는 6월 중간 집계 시에 나머지 도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나란히 1·2위의 실적을 올렸던 곳이다. 충북은 8월 마감 후 임시집계까지도 90% 가까운 실적의 1위였다가 70%대를 기록하는 것으로 반전되었는데, 통계 자료의 착오로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 그런 면에서 충북의 ‘실재 호적수’는 신뢰하기 충분치 않은 자료라 할 수 있다. 각도별 실적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이다.

아무튼 조선총독부가 창씨 신고 실적 제고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결과 호적수 기준으로 80.5%에 해당하는 약 322만 9천 명의 호주들이 기한 내에 창씨 신고를 마쳤다. 남차량은 이를 통해 자신의 통치 실적을 본국에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 2) 실적에 따른 논공행상

창씨 신고는 앞의 실적에서 본 바와 같이 도별 순위를 매겼기 때문에 도별 경쟁이 치열했고, 그 경쟁은 조선총독부 당국이 조장한 것이었다. 창씨 신고 실적 제고를 위해 각 도청에서 벌인 노력은 87.3%의 실적을 올린 평안북도(도지사 西本計三)에서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안북도청에서는 4월 하순 각 부군에 “창씨는 관리로부터 솔선” 구호를 시달하고, 이어 평북 부윤·군수회의를 통해 ‘창씨상담소의 활동 촉진에 관한 건’의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또 5월 10일 평북 도내 초등·중등학교 교직원에게 ‘창씨는 교직원으로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직원 모두가 창씨’를 목표로 솔선 창씨할 것을 통첩했고, 6월 11일 공립 초등학교장 273명을 소집하여 “학교 직원의 씨 창정”을 지시했다. 이어 평북 학무과에서는 7월 말 학교 아동의 창씨 상황 조사 ‘성적이 좋지 않은’ 학교명을 작성했다.<sup>54)</sup> 도청을 중심으로 한 총독부의 지방 관서의 이런 압박은 창씨제가 조선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제의 강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처럼 도청을 중심으로 창씨 신고 실적을 높이려는 활동은 비단 평북 만의 사례가 아니라 다른 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총독부가 ‘반도 30년 통치사상 최대의 功業’으로 자평했던 창씨제 실시과정에서 실적을 통해 논공행상이 없을 수는 없었다. 창씨제 실시과정에서 일선의 최고 책임자는 각 도의 도지사였으므로 그들을 대상으로 진퇴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와 함북만 창씨제 실시 기간에 도지사가 교체되었고, 나머지 11개 도는 1940년 2월 이전에 임명되어 1940년 9월 이후에 교체되었다.

〈표 6〉 창씨제 시행 전후 각 도지사 재임 경력

도별	순위	실시 전 (1940.2 이전)	실시 중	실시 후 (1940.8 이후)	비고
경기	8/8	甘蔗義邦 1937.7.3	鈴川壽男 1940.5.30		1941.11.19 司政局長
충북	1/12	俞萬兼 1939.4.26		伊藤泰彬(尹泰彬) 1940.9.2	1940.9.2 依願免本官

54) 미즈노 나오키, 앞의 책, 97~129쪽. 그밖에 도회 의원들은 3월 2일 간담회 자리에서 ‘전 도회 의원 일동이 함께 창씨’를 합의 결정했다. 또 6월 1일 신의주 지방법원 관내 판사회의에서는 “한층 창씨 철저에 박차를 가할 것”을 결의했고, 7월 14일 신의주지방법원 관하 검사회의에서도 창씨 독려 방법을 협의했다.

충남	12/3	李聖根(金川聖) 1939.5.17			
전북	9/11	孫永穆 1937.4.1		李家源甫(李源甫) 1940.9.2 依願免本官	1940.9.2 依願免本官
전남	6/7	新貝肇 1937.7.3		武永憲樹 1940.9.2	
경북	7/5	上瀧基 1936.9.5		高橋敏 1941.1.24	1941.11.19 殖產局長
경남	3/4	山澤和三郎 1938.9.10			1941.11.19 農林局長
황해	11/9	金秉泰(金村泰男) 1939.12.28			
평남	10/10	石田千太郎 1938.8.18			1941.11.19 厚生局長
평북	2/1	西本計三 1939.3.15		高安彥 1940.9.2	1940.9.2 依願免本官
강원	4/2	尹泰彬 1939.5.17		高尾甚造 1940.9.2	
함남	5/6	篠川恭三郎 1936.10.16		新貝肇 1940.9.2	1940.9.2 依願免本官
함북	13/13	兒嶋高信 1936.7.30	大野謙一 1940.3.9		

출전: 『조선총독부관보』에서 작성.

위 표를 보면, 창씨 신고 마감 다음 달인 9월 2일에 13도 가운데 6개 도에서 도지사 이동이 있었다. 충북·전북·전남·경북·평북·강원·함남이 그 대상이 되었다. 도지사직에서 물러난 인물이 4명인데, 충북의 유만겸, 전북의 손영목, 평북의 西本計三, 함남의 篠川恭三郎 등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이 각각 2명이다. 인사가 이루어진 시점인 9월 초순에 이들의 창씨 실적을 보면, 유만겸과 西本計三은 도별 창씨 실적이 각각 1·2 위였고, 篠川恭三郎도 5위로 평균 이상이었다.

그 가운데 손영목과 유만겸의 퇴임을 두고, 水野直樹는 이들이 자신들의 씨 설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다. 즉 총독부가 씨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자가 지사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다.<sup>55)</sup> 그러나 같은 날 자리에서 물러난 西本計三, 篠川恭三郎 등 2명의 일본인 도지사의 퇴임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게

다가 이들 2명의 평북과 함남은 창씨 실적에서도 首位이거나 평균 이상을 거둔 곳이었다.

퇴임 시점인 1940년 9월 2일에는 창씨 실적 임시 집계에서 도별 순위 1위였던 충북의 유만겸은 퇴임 직전인 8월 31일 고등관 1등에 승등되고, 퇴임일인 9월 2일 곧바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칙임관 대우)에 임명되었다.<sup>56)</sup> 이어 10월 15일에는 훈3등 서보장을 받았다. 1938년 11월 훈4등 서보장을 받은 지 만 2년도 되지 않은 때였다. 자신이 창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 당한 인물이 받은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

西本計三과 笹川恭三郎은 퇴임 이후 기업체 임원 자리로 옮겼다. 笹川恭三郎은 9월 7일 북선합동전기주식회사 대표 취체역이, 西本計三是 9월 14일에 조선판업진흥주식회사 이사가 되었다.<sup>57)</sup> 조선총독부 고위 관리를 역임하고 퇴임한 자들이 ‘낙하산 인사’를 통해 국책 기업의 임원으로 변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인의 창씨 여부가 진퇴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사례를 통해서도 유추되는데, 먼저 창씨를 하지 않았던 김대우가 1943년 전라북도 지사에 임명되었던 점, 창씨제 실시 기간에 창씨 신고를 했던 김태석(金林泰錫)이 유만겸 등과 같은 날 경상남도 참여관 겸 도사무관 자리에서 의원면직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참여관은 도지사에 이어 ‘도의 제2인자’라고 불렸던 직책이다. 김태석은 참여관 면직 이후 西本計三과 함께 9월 14일에 조선판업진흥주식회사 감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인 1944년 2월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다.<sup>58)</sup>

창씨 신고를 마감한 다음 달 초에 4명의 도지사가 퇴임했다. 13개 도 가운데 9위로 평균 이하의 성적을 거둔 전북의 손영목을 제외하면, 도별 실적 1위를 달성한 충북의 유만겸은 칙임 대우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

55) 미즈노 나오기, 앞의 책, 239~240쪽.

56) 『조선총독부관보』 1940년 9월 5일자 및 9월 7일자.

57) 『조선총독부관보』 1940년 10월 16일자 및 11월 9일자.

58) 『조선총독부관보』 1944년 2월 17일자.

고, 2위 평북의 西本計三과 5위 함남의 笹川恭三郎은 국책 기업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창씨제 시행과정에 좋은 성적을 올린 이들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된다.

#### 4. 친일 조선인의 협력

##### 1) 조선인의 협력

창씨제 실시 과정에 조선인은 다음 네 가지의 방법으로 일제에 협력했다. 즉 사법법규개정조사위원회 위원 활동 행위, 솔선하여 창씨와 개명한 행위, 창씨를 독려한 행위, 창씨제 실시에 대한 감사표시 행위 등이다.

먼저, 1939년 ‘조선민사령’ 개정을 위해 구성된 사법법규개정조사위원회 위원 활동 행위이다. 사법법규개정조사위원회 위원 활동을 한 사람으로는 이승우, 한규복 등이 있다. 이승우는 1949년 4월 6일 열린 반민특위 공판에서 일본식 서양자 제도, 창씨에 대한 법문 제정에 참여한 것을 시인한 바 있다.<sup>59)</sup> 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39년 11월 조선민사령 개정이 공포되었을 때, 그 취지를 설명하는 글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솔선하여 창씨를 신고한 행위이다. 솔선 창씨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월 4일 경기도회에서 가평의 송성진(平山正夫)의 긴급동의로 ‘솔선 창씨’에 대한 협의를 주장하고, 한상룡이 찬성의 견을 표하여 만장일치 가결되었다.<sup>60)</sup> 또 간도성장 이범익과 민생청장 유홍순이 각각 清原과 中原으로 창씨했다.<sup>61)</sup>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면장회

59) 『동아일보』 1949년 4월 7일(2면) 「同姓으로 內鮮一體, 李升雨 創氏法 起草是認」.

60) 『동아일보』 1940년 3월 5일(2면) 「氏制度 創定에 京畿道會서 一致可決」.

61) 『만선일보』 1940년 2월 15일(3면) 「率先 間島李省長 清原範益으로 劉廳長은 中原으로 創氏」.

의를 통해 솔선 창씨를 결의했다.<sup>62)</sup>

이 시기 총독부 고등관급 관리들은 창씨 신고서를 인사과에 제출했는데, 4월 12일 현재 도지사, 참여관, 군수, 중추원 참의 등 72명이 신고를 마쳤다.<sup>63)</sup> 창씨 신고서를 제출한 관리들은 조선총독부관보에 신고 내용이 게재되었다. 1940년 2월과 3월에 창씨 신고를 한 조선총독부 고등관 가운데 창씨만 한 사람(유형1), 창씨와 개명을 같이 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고, 창씨와 개명을 한 사람은 다시 동시에 한 사람(유형2)과 시차를 두고 한 사람(유형3)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7〉 조선총독부 고등관의 창씨개명 사례(1940년)

성명	직위 (신고 시점)	창씨			개명		
		월일	씨	관보 제재일	월일	명	관보 제재일
유형1	이원보	총독부 사무관	2.11	李家	3.26		
	이승우	중추원 참의	2.11	梧村	“		
	김창균	총독부 편수관	2.11	金子	“		
	이병용	총독부 검사	2.12	大和田	“		
	장영한	군수	2.15	安東	“		
	은치황	군수	2.23	幸村	3.29		
	정난교	중추원 참의	2.17	海平	“		
	이진호	중추원 참의	2.22	李家	4.13		
	송문화	부윤	3.15	山木	“		
유형2	박보양	중추원 참의	3.8	江原	3.29	3.8	基陽 3.29
	김관현	중추원 참의	3.8	金光	4.13	3.8	副臣 4.13
	손석도	군수	2.22	孫山	“	2.22	宗明 “
	김창수	중추원 참의	3.9	金山	4.15	3.9	敬 4.15
	어 담	중추원 참의	3.16	西川	“	3.16	潭一 “
	조병칠	군수	3.12	富山	“	3.12	光雄 “
	조영원	공립소학교장	2.28	天城	“	2.28	元治 “
	김영년	군수	3.29	金光	“	3.29	俊治 “

(62) 『동아일보』 1940년 3월 29일(2면) 「創氏制度에 關하여 漣川面長會議」.

(63) 『매일신보』 1940년 4월 14일(2면) 「高等官級은 創氏七十餘名」.

	정호기	총독부 사세관	3.15	河津	"	3.15	亨	"
유형3	문동호	군수	2.11	文元	3.26	2.25	義宗	3.26
	서성극	군수	2.11	利川	"	2.17	恒雄	"
	김윤정	중추원 참의	2.18	淸道	"	2.19	金次郎	"
	이겸제	중추원 참의	2.15	福田	3.29	2.28	謙治	3.29
	최지환	중추원 참의	2.12	富士山	"	2.15	隆盛	"
	조기행	군수	2.12	嘉川	"	3.2	義英	"
	강보형	총독부 경시	2.13	烏山	"	2.29	馨	"
	장현근	중추원 참의	2.14	張間	"	3.6	憲四郎	"
	박재홍	도 이사관	2.15	增永	"	2.22	弘	"
	김기득	총독부 司稅官	2.19	天岡	"	3.2	照雄	"
	윤종화	군수	2.12	伊坂	4.13	2.24	和夫	4.13
	윤갑병	중추원 참의	2.12	平沼	"	3.4	秀雄	"
	조병상	중추원 참의	2.11	夏山	"	3.4	茂	"
	방진태	군수	2.11	房村	"	3.4	敬之助	"
	최상봉	군수	2.17	松山	"	3.11	弘	"
	김정석	중추원 참의	2.13	金山	4.15	2.22	韶能	4.15
	정홍모	공립소학교장	2.17	大川	"	3.12	秀雄	"
	이관희	군수	3.15	松永	"	3.26	憲明	"
	김용찬	총독부 검사	2.16	金村	"	3.6	良平	"
	김종석	총독부 판사	2.15	金井	6.17	5.3	鍾久	6.17

출전: 『朝鮮總督府官報』의 '官吏創氏', '官吏創氏竝改名', '官吏改名' 등에서 작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씨는 신고제이고, 개명은 허가제였기 때문에 개명에는 다소 시일이 걸렸다. 따라서 창씨뿐만 아니라 개명도 함께 한 경우 창씨와 개명에 시차가 있는 유형3이 자연스런 것이다. 유형2처럼 창씨와 개명이 동시에 된 것은 먼저 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그것을 창씨 신고와 동시에 관청 호적계에 제출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씨뿐만 아니라 개명도 함께한 자들이 내세운 개명 이유는 '씨제도 창설에 따라 재래의 이름이 새로 창설한 씨와 부자연'하다는 것이었다.<sup>64)</sup>

<sup>64)</sup> 2월 12일 경성지방법원 호적계에 60여 명이 개명신고서를 접수했다(『동아일보』 1940

관리들의 창씨 신고는 다른 이들의 동참을 바라는 ‘솔선’의 의미가 있었다.

다음으로 창씨를 독려한 행위에 대해 살펴보자. 독려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는 관리의 독려, 집단 결의 주도, 글과 강연을 통한 권유 선전, 창씨후원회 활동 등이 있다. 먼저 관리의 독려는 경기 개풍군수 이윤세(李家允世)의 사례<sup>65)</sup>에서 볼 수 있다. 또 위 표에서 창씨와 개명을 같이 한 유형2의 인물로 구분된 자 중 김영년은 창씨제 시행 직전인 1940년 2월 3일 아산군수에 임명된 인물인데,<sup>66)</sup> 솔선해서 창씨와 개명을 했고, 창씨의 독려에도 진력했다. 그의 독려에 따라 4월 말까지 ‘창씨순회상담반의 활동에 의해’ 군민의 70%가 창씨를 했다. 또 그는 5월 5일부터 일주간을 창씨실시주간으로 정하고, 군과 면에 온갖 상담반을 조직하여 야간을 이용하여 각 부락에 군 직원과 면 직원이 출장, 상담하도록 했다. 창씨 신고 마감 기한을 두 달이나 앞당겨 6월 10일 무렵까지는 “한 사람도 남김 없이 완료할 예정”으로 아산군 주민들의 창씨 신고를 적극 독려했다.<sup>67)</sup>

다음은 집단 결의 주도로 유림들의 단체 창씨 결의를 보면, 평북 선천군 유도회가 4월 15일 정기총회에서 935명이 4월 말까지 창씨하기로 결의했고, 전남 여수군 유도회에서도 5월 14일 총회석상에서 71명이 6월 말까지 창씨하기로 결정했다. 유림이 창씨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는 경북 유림 26,842명 중 99%에 해당하는 26,670명이 창씨자라는 사실에서 극명히 드러난다.<sup>68)</sup>

이처럼 유림들의 창씨열은 창씨제에 대한 당시 유림들의 인식을 통해

년 2월 13일(2면) 「改名許可願 京城法院에 殺到」).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당 50전 수입인지 첨부, 송달료로 시내는 10전, 시외는 14전 동봉, 호적초본 1부, 개명허가계서 전부 2통 보낼 것이 요구되었다.

65) 『매일신보』 1940년 6월 14일(3면) 「舉郡一致를 目標로 開豐 創氏에 邁進 莫서 二萬五千突破」.

66) 『조선총독부관보』 1940년 2월 3일자. 군수 임명 전 직위는 忠淸南道郡屬 兼 忠淸南道屬 忠淸南道警部이다.

67) 『경성일보』 5월 26일자 ; 미즈노 나오키, 앞의 책, 122쪽 재인용.

68) 『제79회 제국의회 설명자료』(1941년 12월).

엿볼 수 있는데, 경성부 공덕정의 유림 장행원(장씨명 張本行遠)은 한시를 지어 창씨개명을 남차랑의 공적으로 칭송했고,<sup>69)</sup> 경기도의 경학원 강사 조병렬(趙炳烈, 창씨명 嘉川久士)은 ‘성지 참배’ 명목으로 일본에 가서 “문패에는 가천구사(嘉川久士)라고 훌륭한 황민이 되어있으나, 실제로 그 문에서 나오는 사람은 조병렬(趙炳烈)이 나온다고 하는 일은 안 될 것입니다.”라 하여 ‘실질적 황국신민, 완전한 황민’을 강조했다.<sup>70)</sup> 이러한 유림들의 인식은 ‘황도유학’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것이었다.<sup>71)</sup>

유림 외에 기생들의 조직인 종로권번도 단체 창씨를 결의했다. 5월 8일 권번사장 전성우은 江原으로, 회계과장 이상원은 岩本으로, 서무과장 최형식은 平山永光으로, 기생주임 백영기는 白川榮吉로, 기생 이춘자는 木元으로 창씨했다.

다음은 글을 통한 권유 선전이다. 그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한 인물은 단연 이광수를 꼽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 하여 따로 살펴보겠다. 문시혁(文室時光)은 기고문에서 1. 창씨제와 혈통 2. 창씨의 자유와 필요 3. 창씨제와 역사적 타당성 4. 창씨와 발전성 5. 창씨의 호칭과 조화 등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sup>72)</sup> 윤기현(鈴川勝夫)의 「氏設定에 對한 私見」<sup>73)</sup>과 이돈화(白山一熊)의 「創氏와 再生」<sup>74)</sup> 역시 글을 통한 권유와 선전에 해당한 것이다.

<sup>69)</sup> 반민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 관계사료집』 VIII, 2009, 291쪽. 그의 한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임하시어 훌륭한 정치를 폐고 가시는 이때 雪山輕重去來辰  
누군들 공의 정책 인애했다고 말하지 않으리오 孰不云公政策仁  
창씨개명, 징병제의 신제도 創氏徵兵新制度  
내지와 조선 오늘에서야 동등해졌다네 內鮮今日等威均

<sup>70)</sup> 『반민사료집』 VIII, 376쪽.

<sup>71)</sup> 유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항일의병의 전통을 이어서 ‘제1차·제2차 유림단 사건’을 통해 항일 투쟁에 섰던 반면에, 대다수 유림들은 일본 천황을 충성의 대상으로 받드는 황도 유학을 수용하여 변절했다. 황도유학 및 황도유림에 대해서는 정육재의 「한 말·일제하의 유림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9) 참조.

<sup>72)</sup> 『매일신보』 1940년 6월 8일(2면) 「創氏所感」.

<sup>73)</sup> 『매일신보』 1940년 4월 9일(2면) 「氏設定에 對한 私見」.

<sup>74)</sup> 『매일신보』 1940년 9월 3일(2면) 「創氏와 再生」.

또 『매일신보』는 ‘創氏名 家庭化의 披露談. 새 씨명을 이러케 常用해 갑시다’라는 코너를 만들어 창씨한 지도급 인사의 부인을 동원하여 창씨 선전물을 연재했다.<sup>75)</sup>

다음은 강연을 통한 권유 선전이다. 1940년 4월 15일부터 27일까지 국 민정신동원총연맹 경기도 연맹 주최 창씨개명 강연이 열렸는데, 강연자는 경기도의원이자 도연맹 이사 이승우(오촌승우), 조병상(하산무), 도의 원이자 도연맹 평소원혁(윤원혁), 김민식(김광민) 등 4명이었다.<sup>76)</sup>

창씨후원회 활동은 4월 26일 청주군 창씨후원회 결성 사례가 있다.<sup>77)</sup> 이 후원회에서 군수가 회장을, 내무과장이 부회장을, 각 읍면장이 평의원을, 도회의원, 각 관공서장, 지방유지들이 고문을 맡았다.

창씨제 실시에 대한 감사표시 행위도 있는데, 그 사례로 감사문 발송 결의 주도, 국방헌금 기부, 기념탑 제작 전달 등이 있다. 감사문 발송은 1940년 3월 11일 경기도회에서 연천군 출신의 윤원혁의 긴급동의로 남차 랑 총독에게 창씨제도에 관하여 감사문 발송을 결의했다. 그 내용은 “지원병 제도의 실시와 조선교육령 개정 등에 의하여 내선일체의 실(實)이 구현되어 있는 이때에 각하의 어 영단에 의하여 창씨제도가 설정을 보게

75) 『매일신보』 1940년 8월 23~28일(4면). 기고자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날짜 및 기고자	제 목
8월 23일 사무관 최하영(香山夏永)의 처	「이것이 정말內鮮一體 ‘가야마’라고 부를때마다 새히망이 소사납니다」
8월 24일 중추원 참의 조병상(夏山茂)의 처	「創氏名常用은 勿論 될 수 있는대로 國語를 쓰고 生活도 內地人式으로 改善」
8월 26일 사무관 한동석(朝天東鉅)의 처	「皇國臣民의 기쁨. ‘아사까와’家에 光榮이 잇으라 네子女의 將來를 축복」
8월 27일 이광수(香山光郎)의 처	「創氏改名은 우리집이 첫째. 가정에선 솔선해야 국어사용」
8월 28일 사무관 정용신(青山信介)의 처	「內鮮一體를 先覺한 家庭. 시부모는 內鮮結婚. 生活도 純內地人式」

76) 『매일신보』 1940년 4월 14일(2면) 「創氏의 趣旨徹底에 津々 浦々 講演行脚 精動京畿  
聯盟主催로」; 『동아일보』 1940년 4월 14일(2면) 「創氏制 徹底코자 普及講演行脚」;  
『동아일보』 1940년 4월 15일(2면) 「創氏講演行脚 精動京畿聯盟서」.

77) 『매일신보』 1940년 4월 29일(3면) 「淸州創氏後援會 官民一致로 結成코 趣旨의 普及  
에 努力」.

된 것은 도민이 일제히 감사함을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에 경기도회는 만장일치로 감사 뜻을 표합니다.”라는 것이었다.<sup>78)</sup>

연천군의 면장들도 면장회의 결과를 전보를 통해 총독에게 보고하면서 창씨제를 칭송하고,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는데, 그 내용은 “남총독 각하는 조선교육령 개정, 지원병제 실시에 다음가는 금번 창씨의 길을 열어 주어서 우리 조선인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어 민중의 감격하는 바 있다. 우리는 면장 일동이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고 면민이 모두 이 은택을 받고자 노력하기로 결의하였다.”<sup>79)</sup>라는 것이다.

국방현금 기부 사례는 하얼빈의 新安縣 安同街 20호 金永善이 창씨제 실시에 감격하여 2월 13일 경찰청 병사부 호적계에 26원을 전달한 것이다.<sup>80)</sup>

기념탑 제작 전달 사례도 있다.<sup>81)</sup> 중국 山西省 太原 민회장 岡村仁和 외 유지들이 주체가 되어 1941년 8월 창씨 신고서 마감 1주년을 맞아 8월 8일 경성에 들어와 11일 총독실에서 총독에게 바쳤다. 이들이 총독에게 이 탑을 바친 것은 조선총독이 ‘조국의 아버지’라 할만하다는 명목이었고, 이 기념탑의 규모는 높이 3자의 은제 5층탑으로 ‘전에는 자칫하면 지나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았었는데 그 후는 이것이 전혀 없어서 명랑스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였다. 岡村仁和는 8월 12일 밤 방송을 통해 ‘이 기회에 우리 반도 동포들은 한층 팔굉일우의 성지를 받아들여 국가에 봉옹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솔선하여 창씨한 행위, 관리로서 독려한 행위, 글을 통해 창씨제를 찬양하고 선전한 행위, 강연에서 창씨를 독려한 행위, 도회에서 창씨제 실

78) 『매일신보』 1940년 3월 12일(3면) 「創氏制 實施에 관하여 南총독에게 謝電」.

79) 『동아일보』 1940년 3월 29일(2면) 「創氏制度에 關하여 漣川面長會議」.

80) 『동아일보』 1940년 2월 24일(2면) 「創氏制 感激코 獻金」.

81) 『매일신보』 1941년 5월 6일(3면) 「南總督에 感謝하는 創氏報恩의 記念塔. 北支太原 居留千餘同胞가 先鞭」; 『매일신보』 1941년 8월 7일(2면) 「創氏의 感激을 색여 總督에 報恩記念塔. 北支半島人代表가 携帶, 九日入城」; 『매일신보』 1941년 8월 9일(2면) 「在北支同胞들 創氏報恩塔. 今日 南總督에 進呈」; 『매일신보』 1941년 8월 12일(2면) 「創氏報恩의 銀塔. 今朝 南總督에 太原有志들이 贈呈」; 『매일신보』 1941년 8월 14일(2면) 「創氏感激을 披瀝. 入城한 太原在留同胞代表放送」.

시 감사문 발송 결의를 주도한 행위, 총독에게 은제 창씨기념탑을 바친 행위 등은 모두 창씨제 실시에 적극 협력한 행위이다.

## 2) 이광수의 先導 창씨개명과 창씨제 선전 활동

### (1) 先導 창씨개명과 창씨제 선전

이광수가 창씨개명을 신고한 날짜는 2월 12일이다. 그는 德富蘇峰에게 보낸 편지(2월 12일자)에서 ‘本日 戶籍係에 届出’이라 적었다. 2월 12일 창씨개명을 경성부 호적계에 신고하고, 病餘 刑餘의 生命을 文章報國에 바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으로 그날 덕부소봉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sup>82)</sup>

이광수는 창씨개명 신고 직후 신문 기고를 통해 자신의 창씨개명의 배경을 밝혔다.<sup>83)</sup>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天皇의 臣民이다. 내 子孫도 天皇의 臣民으로 살 것이다. 李光洙라는 氏名으로도 천황의 신민이 못될 것이 아니다. 그러나 香山光郎이 조금 더 天皇의 臣民답다고 믿기 때문이다. (중략)

이제 우리는 日本帝國의 臣民이다. 支那人과 混同되는 姓名을 가짐보다도 日本人과 混同되는 氏名을 가지는 것이 가장 自然스러운 일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일본인이 되는 決心으로 氏를 香山이라고 하고 名을 光郎이라고 하였다. 내 妻子도 모조리 日本式 名으로 고쳤다. 이것은 忠誠의 一端으로 自口하는 까닭이다.

이광수는 이처럼 창씨개명이 시행된 초기에 창씨개명을 신고하고, 신문에 자신의 창씨개명 이유를 밝혔다. 그 이유는 ‘일본인이 되는 결심’과

82) 이광수 지음, 김원모·이경훈 편역, 『동포에 告함』, 철학과 현실사, 1997, 303~309쪽. 이 대목에서 이광수가 2월 11일 창씨제 시행 이전에 경성지방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여 이미 허가를 받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2월 12일에 경성부청 호적계에 창씨 및 개명 신고를 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83) 『매일신보』 1940년 2월 20일(2면) 「創氏와 나」.

‘충성의 일단’이었다. 이렇게 창씨개명은 이광수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따른 행동이었다. 이광수는 선도 창씨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창씨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발표하여 창씨 신고하도록 선동했다.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번호는 필자가 임의로 붙임 것임)<sup>84)</sup>

- ①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징병령의 실시를 보게 되면, 씨 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조선인은 완전히 황민화되는 것(「황민화의 한 길」)
- ② 창씨개명은 폐하의 적자가 되겠다는 맹세로서, 또는 그 기념으로서, 새롭게 국민 생활을 시작하는 선언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잘못 된 생각」)
- ③ 이제 조선인의 목표는 내선일체에 있으므로, 이 대목적에 지장을 주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종래의 중국식 성명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다.(「존폐의 선택」)
- ④ 조선인에게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는 것 (중략) 이는 특별지원 병, 창씨와 함께 내선일체의 鼎을 이루는 세 다리라고 할 만하다. 게다가 이 대사업들이 겨우 3년 동안에 잇따라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고마운가.(「잇따른 기쁨」)
- ⑤ 황기 2600년은 동시에 병합 30주년이 된다. 소화 15년 2월 11일의 기원절부터 시작된 반도 동포의 창씨 신고는 8월 10일 오후 열두 시에 끝났다. (중략) 이 기쁜 날을 맞아 이제 한번 창씨의 의의를 생각해 보자.(「8월 10일의 기쁨」)

이광수는 그로부터 3년 후에 있었던 좌담에서도 창씨와 징병제를 찬양 했다.<sup>85)</sup>

## (2) ‘향산=묘향산’ 주장 비판

이광수는 1940년 2월 12일 창씨와 개명을 하여 ‘香山光郎’이라고 경성부 호적계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창씨와 개명을 이렇게 한 이유를,

<sup>84)</sup> 이광수 지음, 김원모·이경훈 편역, 앞의 책에서 발췌 인용.

<sup>85)</sup> 『매일신보』 1943년 1월 1일(부록1면) 「國體本義에 徹하는 길」. 이 기사는 이광수와 경성제대 교수 松本重彦와의 대담 기사이다.

“지금으로부터 2천 6백년 신무천황께옵서 어즉위를 하신 곳이 橿原인데, 이곳에 있는 산이 香久山입니다. 뜻 깊은 이 산 이름을 씨로 삼아 香山이라고 한 것인데 그 밑에다 光洙의 光자를 붙이고 洙자는 내지식[일본식 – 인용자]의 郎으로 고쳐 香山光郎이라고 한 것”<sup>86)</sup>이라고 밝혔다. 이광수는 창씨 신고가 개시되기 한 달여 전에 이렇게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지면을 통해 자신의 창씨 香山이 일본의 香久山에서 따온 것임을 세상에 공표했다.

그런데 당사자인 이광수가 밝힌 이 이유를 부정하는 글과 주장이 있다. 香山이 일본의 香久山이 아니라 한국의 묘향산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최독견의 소설 「낭만시대」의 대사와 김원모의 저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소설가 최독견이 1965년에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소설 「낭만시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87)</sup>

춘원의 창씨개명의 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맹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민족정기 위에서 자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요, 그의 고향의 명산 묘향산[강조 – 인용자]의 이름을 따라서 성을 삼고, 광수라는 본명의 광자를 따고, 사내라는 낭(郎) 자를 붙였다는 것이었다.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 언젠가 이광수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대사에는 (이광수) 고향의 명산, 묘향산이 香山光郎의 연원으로 둔갑되어 있다. 이광수가 사망했다는 시기로부터 15년 이 지난 시점에 발표된 소설 속에 등장하는 대사이므로 이 대사가 실제 이광수의 이야기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만약 이광수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1940년 1월 『매일신보』 지면을 통해 일본의 香久山에서 따

86) 『매일신보』 1940년 1월 5일(4면) 「지도자적 제씨의 선씨고심담」.

87) 최독견, 「낭만시대(87)」, 『조선일보』 1965년 6월 10일자 ; 金英達, 앞의 책, 2002, 178~179쪽.

온 것임을 세상에 공표했던 그가, ‘민족정기’, ‘고향의 명산’ 운운하며 자신의 치부를 호도하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또 만일 이광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소설 작가가 지어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아무리 창작물이라 해도 역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야기를 근거 없이 내세웠다는 점에서 무책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1966년에 나온 『친일문학론』에서 임종국은, 이광수의 창씨명 ‘향산’이 처음에는 ‘묘향산’에서 따온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1940년 『매일신보』에 실린 이광수의 기고 글을 접하고 자신의 추측이 잘못됐음을 깨달았다고 밝혔다.<sup>88)</sup>

이광수의 향산을 보고 묘향산을 연상하는 것은, 이광수의 고향이 평안북도 정주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묘향산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곳에 있으며, 평안남도 영원군, 평안북도 희천군과 영변군의 분기점에 위치해 있다. 이광수의 고향 정주읍으로부터 직선거리로 90킬로미터쯤 떨어져 있어서 고향의 명산이라 하기엔 너무 멀다.<sup>89)</sup>

최독견의 소설이나 임종국의 추측이 이광수의 고향과 묘향산을 연결하여 나온 것이라면, 김원모가 그의 저서에서 피력하는 주장은 위 최독견의 소설 속 대사 ‘민족정기’ 운운하는 것과 달아 있다. 김원모는, “내가 친일한 것은 표면상 문제이고, 나는 나대로 친일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 내가 친일한 것은 부득이 민족을 위해 한 것이다(반민특위 조사과정에서 이광수가 한 말)”라는 이광수의 말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겉으로는 친일을 했지만 내면에서는 철저히 조선독립을 염원했다”고 주장했다. 즉 “그것(창씨개명)은 맹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sup>88)</sup>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284쪽 ; 『친일문학론』(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출범 기념본), 민족문제연구소, 2002, 275쪽.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李光洙의 창씨 성명 香山光郎에 관해서 필자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光郎의 「光」은 물론 광수의 「光」자를 딴 것이겠고 「香山」은 이광수가 평북 출생이니 아마도 妙香山의 「향산」을 땠으리라고. 그러나 이같은 필자의 학설은 「指導的諸氏의 選氏苦心談」(每新 40.1.5)을 대하자 그만 혀동지등 쥐구멍을 찾기 시작하였다.”

<sup>89)</sup> 비유컨대 한국의 명산 지리산으로부터 그만큼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이 전남 나주나 경남 창원 등지인데, 그곳 사람이 지리산을 ‘고향의 명산’이라 부를 수 있을까?

민족정기 위에서 자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요”라는 위 소설 속의 대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원모는 한 발 더 나아가 이광수의 향산은 단군조선이 창건된 묘향산에서, 光은 그의 이름에서, 그리고 郎은 永郎이나 述郎과 같은 신라 화랑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주장했다.<sup>90)</sup> ‘향산광랑의 향산=묘향산=단군조선=민족=조선독립’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향산광랑의 향산에서 조선독립까지 이어지는 위 연결고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단절된다면 김원모의 주장은 무리한 것이라 할만한데, 그 연결고리를 단절시키는 역할은 바로 이광수의 시조가 맡았다. 이광수는 그의 연시조 〈태백산〉의 제3연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sup>91)</sup>

妙香山이라고 그 어느 분이 고치신고.  
우리 님 겨웁시든 太白山을, 太白山을.  
철 없는 先人의 所爲를 못내 슬퍼합니다.

김원모는 묘향산이 단군조선이 창건된 곳이라 ‘묘향산=단군조선=민족=조선독립’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삼국유사에는 단군조선이 창건된 곳이 ‘태백산’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태백산이 지금의 어디인가를 두고 여러 설이 있으며, 그와 주장과 같이 묘향산으로 특정되지도 않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광수 자신이 태백산을 묘향산으로 보는 것에 대해 위 시조를 통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태백산의 이름을 묘향산으로 고친 것을 두고 ‘철없는 先人의 所爲’라고 하면서 못내 슬퍼한 이광수가 묘향산의 이름을 따서 창씨명으로 삼았고, 그래서 ‘민족정기’와 ‘조선독립 염원’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일 뿐이다.

90) 김원모, 『영마루의 구름－春園 李光洙의 親日과 民族保存論－』,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9, 1007~1013쪽.

91) 이광수 친, 『東光叢書』 권1(1933.7.10) ; 김원모, 위의 책, 575쪽 재인용.

창씨개명이 실시된 날은 일본이 자칭 '2600주년 기원절'로 불렸던 서기 1940년 2월 11일이었다. 이날 창씨개명이 실시된 것에 대해 일본어판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京城日報』는 "마침내 11일, 기원 가절인 오늘 2천 3백 만 반도 동포에게 있어서는 황국 2천 6백년의 흥륭을 받드는 佳日인 동시에 학수고대해 온 '창씨의 날'이다.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오늘을 학수고대하고 있던 사람들은 각자 숙고하고 숙고한 끝에 결정한 새로운 씨를 멋껏하게 밝히는 바이다."<sup>92)</sup>라고 감격에 격워했다.

그렇다면 '2600주년 기원절'에 맞춰 실시된 창씨개명에서 이광수가 선택한 향산은 신무천황의 香久山에서 따왔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백번을 양보하여 설혹 이광수가 향구산이 아닌 묘향산에서 향산을 따왔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신문을 통해 창씨개명을 선전, 선동했다는 것이다. 창씨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속으로는 묘향산을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향구산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변명을 이해하더라도 이광수가 여러 차례 글을 통해 창씨제를 선전, 선동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창씨제와 관련해서 이광수의 반민족 행위는 그 자신이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점이 아니라 조선인들로 하여금 그 제도를 따르도록 독려했다는 점에 맞춰 다뤄져야 할 것이다.

### (3) 1938년 향산광랑 자호 사용 주장 비판

김원모는 그의 저서에서, 이광수가 1936년 4월 이영학에게 '향산'이란 호를 지어주고, 1938년부터 '향산광랑'이란 자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sup>93)</sup> 사실 이 주장은 김원모가 처음 뒀던 것은 아니고, 1997년 6월 10일자 『중앙일보』에 먼저 보도되었던 기사 내용이다.<sup>94)</sup> 이 기사는 정운

<sup>92)</sup> 『京城日報』 1940년 2월 11일 ; 미야타 세츠코, 「창씨개명의 실시과정」, 정운현 편역, 앞의 책, 71쪽에서 재인용.

<sup>93)</sup> 김원모, 앞의 책, 1008~1013쪽.

<sup>94)</sup> 『중앙일보』 1997년 6월 10일자 「春園이광수 창씨개명 실시 2년 앞서 사용 소설집 '사

현 기자의 기명으로 작성되었던 것인데, 1938년 박문서관이 출간한 소설집 ‘사랑’(초판본)의 판권란<sup>95)</sup>에 저자가 ‘香山光郎’으로 되어 있어 이광수가 창씨개명 실시 2년 전인 1938년에 이미 창씨개명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 속 인터뷰에서 김원모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사실”이라며 “추가 자료를 찾아 정밀한 검증을 해봤으면 한다”고 했는데, 그 검증 결과가 바로 앞에서 언급한 그의 저서에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검증은 지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기사를 접한 후 김영달은 두 가지 점을 들어 이광수가 1938년부터 香山光郎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오류라고 지적했다. 먼저 저자 이외에 발행자와 인쇄자도 각각 ‘瑞原 聖’, ‘月城 孝’라 하여 본관을 씨로 轉用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정가 부분에 특별행위세 상당액 6전이 추가되어 판매가는 1원 56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행위세는 1943년 3월 31일 政令(制令)의 오기－필자) 제8호로 공포되었던 「朝鮮特別行爲稅令」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특별행위세 도입과 함께 새로운 가격표시를 위해 발행일은 그대로 둔 채 가격부분의 내용만 변경했다는 것이다.<sup>96)</sup>

이광수가 1938년에 香山光郎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박문서관의 발행자와 인쇄자도 역시 같은 해에 ‘瑞原 聖’과 ‘月城 孝’로 사용했어야 할 것이다. 그 진위 여부는 이 무렵 박문서관에서 발행된 다른 서적들의 서지사항을 통해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941년 7월 15일에 발행된 한설야의 『한설야 단편선』에는 발행자 廬益亨,<sup>97)</sup> 인쇄자 李相五로 되어 있다.<sup>98)</sup> 이광수의 장편 소설 사랑이 나

량’ 판권란 香山光郎으로」.

95) 발행소는 박문서관(종로구 종로2정목 86번지)이고, 대동인쇄소(종로구 인사정 119번지)印行이다.

96) 김영달, 앞의 책, 2002, 179~180쪽.

97) 노익형은 박문서관과 대동인쇄소의 주인이자 경영자였다. 그는 10대 때 육의전 중 하나인 저포전의 사환으로 시작하여 물산 객주의 거간을 거쳐 20대초의 나이였던 대한제국 말기에 박문서관을 세워 서적상을 시작했다. 이후 대동인쇄소를 세워 인쇄업을 경영했고, 1930년대 중반에는 십수만 원의 대기업가로 성장했다(「赤手空拳

온 시점보다 3년 가까이 흐른 시점에도 여전히 발행자와 인쇄자의 명의는 창씨명이 아닌 것이다.

또 다음 그보다 5개월 후인 1941년 12월 15일에 발행된 『愛國班 家庭用 謄文防共讀本』에는 발행자 瑞原益亨, 인쇄자 月城 孝로 되어 있다.<sup>99)</sup> 瑞原益亨은 노익형임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고, 月城 孝는 李相五의 창씨명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박문서관 발행 서적의 발행자와 인쇄자는 1941년 7월 이후에 창씨명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인쇄자는 ‘月城 孝’이지만, 발행자는 ‘瑞原 聖’이 아님이 주목된다.

발행자와 인쇄자도 각각 ‘瑞原 聖’, ‘月城 孝’로 이광수의 사랑의 서지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된 것은 1942년 3월 20일에 발행된 박종화의 『多情佛心』<sup>100)</sup>에서 비로소 보인다. 그렇다면 瑞原 聖은 노익형이 瑞原益亨으로 창씨한 다음 다시 개명을 한 이름이거나 아니면 노익형과 가계를 같이 하는 인물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이광수가 1938년 시점에 이미 香山光郎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잘못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광수는 창씨제 실시가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이미 창씨뿐만 아니라 개명까지 마치고 조선총독부 기관지를 통해 일본식으로 창씨개명한 취지와 배경을 밝혔다. 또 창씨제 시행 도중에 여러 차례 글을 기고하여 조선인들로 하여금 창씨 개명하도록 선전, 선동했다. 그런 면에서 이광수의 반민족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

으로 成功한 商界人物, 『삼천리』 제7권 제8호, 1935년 9월 1일[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98) 한설야, 『한설야 단편선』, 박문서관, 1941.7.15.

99) 『愛國班 家庭用 謄文防共讀本』, 박문서관, 1941.12.15.

100) 박종화, 『多情佛心』, 박문서관, 1942.3.20.

## 5. 맷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창씨개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창씨개명은 일제가 조선인에게 강요한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그 목적은 조선인의 생각과 마음을 일본인과 똑같이 만들려는 민족성 말살이었다. 조선 민중들의 머리 속에서 조선민족이라는 의식을 완전히 없애고 대신 그 자리에 일본 민족의 일월이라는 인식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 실시 날짜도 일제가 일본 민족의 기원일로 기리고 있는 ‘2600년 기원절’로 잡았다.

창씨제가 실시된 목적은 일본식 ‘家’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의 각 가정을 일본 천황을 종가로 하여 천황제를 지탱하는 기초로 삼는다는 것, 황국신민화의 일환이라는 점이 지적돼 왔다. 필자는 이에 덧붙여 자신의 실적을 과시하고 싶어 했던 총독 남차랑의 욕심이 더해졌던 것이라 보았다.

제도 시행 초기에 이 제도에 호응하는 조선인은 많지 않았다. 곁으로는 강제성을 부정하면서도 속으로는 억지로라도 시키고 싶었던 조선총독의 의지에 따라 일제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 도별 실적을 공표하여 도별 경쟁을 유도했고, 신고가 마감된 이후에는 실적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호적 총수 대신에 ‘실재 호적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모집단의 비중을 낮추면서 통계수치를 아전인수식으로 이용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는 과정에 친일 조선인이 협력한 사례로는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었다. 맨 먼저는 사법법규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창씨제 실시를 위한 법안 마련에 참여한 이승우 등의 경우이다. 두 번째는 솔선하여 창씨와 개명을 한 행위로 종래의 姓·본관과 무관한 씨를 창설하고 일본식으로 개명하여 창씨제 실시 초기에 신고를 마친 경우이다. 세 번째는 창씨를 독려한 행위이다. 관리로서 솔선 창씨하고 창씨를 독려한 조선총독부 고등관들의 사례, 글과 강연을 통한 권유 선전한 이광

수 등의 사례 등이 이에 속한다. 네 번째 창씨제 실시에 대한 감사표시 행위인데, 감사문 발송 결의 주도, 국방현금 기부, 기념탑 제작 전달 등이 이에 속한다.

친일 조선인이 창씨제 시행과정에서 보였던 이와 같은 협력 행위를 명확히 밝혀내고 그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이들의 협력 행위와는 달리 문중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창씨를 결정하고, 문중회의의 결정에 따라 창씨 신고를 이행한 대다수 조선민중에게 씌워진 ‘친일’ 협의는 벗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창씨=친일’이라는 오해를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창씨개명과 관련된 친일문제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친일 청산’ 방해 세력의 시도를 무력화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 접수일 : 2010.10.11 / 심사완료일 : 2010.11.3
- 주제어 : 창씨개명, 친일, 반민족, 남차량, 이광수

❖ 참고문헌

- 『조선총독부관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만선일보』.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2009.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 관계사료집』 VIII, 2009.
- 『思想彙報』 제23호,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40.6.
- 『思想彙報』 제25호,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40.12.
- 『朝鮮』 제303호, 조선총독부, 1940.8.1.
- 『朝鮮』 제305호, 조선총독부, 1940.10.1.
- 『通報』 제74호, 조선총독부, 1940.8.1.
- 『通報』 제75호, 조선총독부, 1940.8.15.
- 「昭和十五年上奏書」(1940년 5월), 민족문제연구소 편,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제25권, 한국학술정보, 2000.
- 「昭和十六年上奏書」(1941년 5월), 민족문제연구소 편,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제25권, 한국학술정보, 2000.
- 「제77회 제국의회 설명자료」(1941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 편,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제5권, 한국학술정보, 2000.
- 「제79회 제국의회 설명자료」(1941년 12월), 민족문제연구소 편,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제13권, 한국학술정보, 2000.
- 「赤手空拳으로 成功한 商界人物」, 『삼천리』 제7권 제8호, 1935년 09월 01일(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宮田節子, 「創氏改名」에 대하여, 『벽사 이우성교수 정년퇴직 기념논총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 하, 창작과 비평사, 1990.
- 宮田節子 · 金英達 · 金泰昊, 『創氏改名』, 明石書店, 1992.
- 金英達, 『創氏改名の法制度と歴史』, 明石書店, 2002.
- \_\_\_\_\_, 『創氏改名の研究』, 未来社, 1997.
- 김원모, 『영마루의 구름－春園 李光洙의 親日과 民族保存論－』,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9.
- 미즈노 나오키 지음, 정선태 옮김, 『창씨개명－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산처럼, 2008.
- 박종화, 『多情佛心』, 박문서관, 1942.3.20.
- 水野直樹, 『創氏改名－日本の朝鮮支配の中で』, 岩波書店, 2008.
- 『愛國班 家庭用 諺文防共讀本』, 박문서관, 1941.12.15.

388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7집

- 이광수 지음, 김원모 · 이경훈 편역, 『동포에 告함』, 철학과 현실사, 1997.
-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역사비평사, 2008.
-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 정육재, 「한밀 · 일제하의 유림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9.
- 정운현 편역, 『창씨개명』, 학민사, 1994.
- 정재정 역, 『식민통치의 허상과 실상』, 혜안, 2002.
- 정주수, 「창씨개명연구」 1~6, 『사법행정』, 2003.11~2004.5.
- 朝鮮總督官房調查課 編纂, 『朝鮮昭和十五年國勢調查結果要約』, 1944.
- 朝鮮總督府 編纂,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39), 1941.
- 坂元真一, 「“明治民法”의 성씨제도와 “創氏改名”(朝鮮) · “改姓名”(臺灣)의 비교분석」,  
『법사학연구』 제22호, 2000.10.
- 한설야, 『한설야 단편선』, 박문서관, 1941.7.15.

◎ 국문요약

## ‘창씨개명’과 친일 조선인의 협력

### 최재성

창씨개명은 일제가 조선인에게 강요한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그 목적은 조선인의 생각과 마음을 일본인과 똑같이 만들려는 민족성 말살이었다. 조선 민중들의 머리 속에서 조선민족이라는 의식을 완전히 없애고 대신 그 자리에 일본 민족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 실시 날짜도 일제가 일본 민족의 기원일로 기리고 있는 ‘2600년 기원절’로 잡았다.

창씨제가 실시된 목적은 일본식 ‘家’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의 각 가정을 일본 천황을 종가로 하여 천황제를 지탱하는 기초로 삼는다는 것, 황국 신민화의 일환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필자는 이에 덧붙여 자신의 실적을 과시하고 싶어 했던 총독 남차랑의 욕심이 더해졌던 것이라 보았다.

제도 시행 초기에 이 제도에 호응하는 조선인은 많지 않았다. 곁으로는 강제성을 부정하면서도 속으로는 억지로라도 시키고 싶었던 조선총독의 의지에 따라 일제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 도별 실적을 공표하여 도별 경쟁을 유도했고, 신고가 마감된 이후에는 실적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호적 총수 대신에 ‘실재 호적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모집단의 비중을 낮추면서 통계수치를 아전인수식으로 이용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는 과정에 친일 조선인이 협력한 사례로는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었다. 맨 먼저는 사법법규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창씨제 실시를 위한 법안 마련에 참여한 이승우 등의 경우이다. 두 번째는 솔선하여 창씨와 개명을 한 행위로 종래의 姓·본관과 무관한 씨를 창설하고 일본식으로 개명하여 창씨제 실시 초기에 신고를 마친 경우이다.

세 번째는 창씨를 독려한 행위이다. 관리로서 솔선 창씨하고 창씨를 독려한 조선총독부 고등관들의 사례, 글과 강연을 통한 권유 선전한 이광수 등의 사례 등이 이에 속한다. 네 번째 창씨제 실시에 대한 감사표시 행위인데, 감사문 발송 결의 주도, 국방현금 기부, 기념탑 제작 전달 등이 이에 속한다.

친일 조선인이 창씨제 시행과정에서 보였던 이와 같은 협력 행위를 명확히 밝혀내고 그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이들의 협력 행위와는 달리 문중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창씨를 결정하고, 문중회의의 결정에 따라 창씨 신고를 이행한 대다수 조선민중에게 씌워진 ‘친일’ 혐의는 벗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창씨=친일’이라는 오해를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창씨개명과 관련된 친일문제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친일 청산’ 방해 세력의 시도를 무력화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❶ 영문요약

## Imperialist Japanese Enforcing the Change of Surname in Joseon, and the Activities of Korean Collaborators

Choe, Jae-Seong

Imperialist Japan, especiall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enforced Korean people to change their surname from Korean style, Seong(姓) to Japanese style, Ssi(氏) in 1940. The changing of Koreans' surname Policy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was to enforce Korean people to make their thoughts and minds to same to Japanese things.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ried to efforts to increase the number of Koreans who registered new surname, although the Governor-general, Minami Jiro denied the Registration of new surname, Japanese style, Ssi(氏) was not compulsion.

Part of Korean who were pro-Japanese rule also collabora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Koreans who registered new surname. Collaboration were four types.

First, engaging to prepare a bill, as the member of the Council for revision of the relevant regulation. Second, Registering of both Japanese surname and name, not only surname but name early. Third, Being a pioneer who registered new surname early than mass Korean, and propagating the registration of new surname by contributing a column to newspaper and giving a lecture. And the last, expressing their gratitude for changing

surname policy, for example, leading to make resolution to send a letter of thanks to the Governor-general, donating political contribution to Imperialist Japan.

key words: the change of surname, the changing of Koreans' surname Policy, the Registration of new surname, Minami Jiro.